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0. 5. 28.
- 회부일자: 2020. 5. 28.
- 검토기간: 2020. 5. 29. ~ 2020. 6. 5.

2. 제안이유

-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및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사업주체가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설치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 운영체 선정을 위한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가칭)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정원 (예상)	시설특성	비고
상인역 모아엘가파크뷰 어린이집	상화북로 162(상인동)	185.55㎡	43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598세대 '19년 12월 준공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	본리동 300-1번지	304.4㎡	48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789세대 '20년 8월 준공예정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5년

○ 운영체 선정 방법: 공개모집(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운영체(수탁자)

- (가칭)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을
각각 이현진, 박경선에게 위탁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구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
- 금번 동의안에 반영된 전환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음.

시설명(가칭)	소재지	규모 (연면적)	정원 (예상)	시설특성	비고
상인역 모아엘가파크뷰 어린이집	상화북로 162(상인동)	185.55㎡	43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598세대 19년 12월 준공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	본리동 300-1번지	304.4㎡	48명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 사용 협약 체결	789세대 20년 8월 준공예정

- 이에 구는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위 2개 시설의 수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이현진, 박경선을 각각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달서센트럴더샵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6~8월 위탁계약 체결, 7~9월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후, 2020년 9~10월 개원할 예정.
- 상위 법령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립 전환 예정인 위 어린이집들의 위탁 방식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